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실장(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실장(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3일

대전광역시대덕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채용직급	인원	임용기간	주요 담당 업무
감사실장	지방행정.시설사무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개방형5호)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산하기관 감사 비위 사실 조사 및 징계 제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국민고충민원 청원 진정 등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현안사업 추진상황 확인, 평가 및 환류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연장 가능

※ 총 임용기간(5년)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 등 개방형직위 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2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3 임용신분

가.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절차를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유지

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18세 이상
- 거주지 · 성별: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주요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퇴직 전 2년 이내로 수행한 경우)

- 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
-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 ④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 ⑤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 바. 삭제 <2022. 1. 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자격요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법 제11조제1항제6호 관련**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경력(업무유사성)등 고려]

나. 2차시험: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여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검증
- 능력요건 : 5개 요건 / 각 요건에 대한 자격수준을 심사하여 하부요소별 배점에 따라 평정
 - ① 전문기술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③ 변화관리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부적격 결정기준

적격성 심사에서 **능력요건의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0%(60점)미만으로 평가된 응시자**는 부적격으로 결정하여 선정 제외

6 시 험 일 정

응시원 접수 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적격성 심사(면접시험) 공고	적격성 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및 장소	
2026. 7. 14.(화) ~ 7. 21.(화)	7. 27.(월) 예정	7. 31.(금) 예정 (추후 공지)	8. 5.(수) 예정 (추후 공지)

-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 / 채용공고)에 게시
- ※ 면접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7 보 수 수 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하한액 (5호 / 53,316천원)**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협의 가능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봉 외 수당 지급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보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결정

8**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 『채용공고』에 게시(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5일 이상

- 공고 후: 2026. 7. 14.(화) ~ 2026. 7. 21.(화) (5일간) /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다. 접 수 처: 대덕구청 2층 운영지원과(채용담당자)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직접 작성(구비)하여 근무 시간 내(09:00 ~ 18:00 / 점심시간 제외)에 제출 (우편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익일특급)에 한하여 유효하며, 사전 연락 (042-608-6523) 요망

▷ 주소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우편접수자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1만원권)’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통상환증서 구입은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가능(금융창구 마감시간과 우편창구 마감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할 우체국에 문의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실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원서 재증” 표기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제1호)	○ 아래 서류 중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표기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수수료 : 대덕구 수입증지 부착(구입: 대덕구청 1층 공감민원과) ▸ 감사실장(5급상당):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수수료 반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응시이사 철회 시 납부한 수수료 전액, 시험 실시일(면접시험일) 전에 응시이사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50%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A4 5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본인 자필 작성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8. 자격증 사본 1부	○ 기타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자는 최종면접 시 원본 지참)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간, 부서,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포함) <li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주의 사항 ① 경력(재직)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본인이 지원하는 임용분야 자격요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②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 자격요건 내용이 기재 안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제출 가능 (단, 원본 지참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부분 제출 가능)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주당 또는 1일)을 경력증명서에 명시(불분명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근무경력기간 기준(예시) : 주 40시간(1일 8시간) 12개월 상근할 경우 → 1년 산정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일반임기제는 3년(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10.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 확인)
11. 동의서 각 1부 (※ 자필 서명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12. 기타 제출 자료	○ 채용분야 관련하여 응시자가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해당자)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대덕구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함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고합니다.

2.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증자료 중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운영지원과(☎042-608-6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I. 기본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보직가능 직급
대덕구 감사실	감사실장	일반직 또는 임기제	지방행정·시설사무관, 임기제공무원 (개방형5호)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산하기관 감사			20
2. 비위 사실 조사 및 징계 제청			20
3.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0
4.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0
5.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6. 국민고충민원, 청원, 진정 등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0
7.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0
8. 현안사업 추진상황 확인, 평가 및 환류			10
6. 관련분야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 감사·조사, 예산·회계·계약 및 세무 등과 관련한 법규적, 실무적 지식과 경험			

II.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① 학력제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② 필수 자격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③ 기타 필수요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p>1) 경력요건</p> (학력 기준) 제한없음 (자격증 기준) 제한없음 (경력 기준)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의사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p>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1번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채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의·사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해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다.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p>2) 실적요건</p> ○ 해당없음

2. 능력요건	① 전문가적 능력 i)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ii)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iii)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i)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ii)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iii)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③ 변화관리능력 i)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ii)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iii)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i)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ii) 업무개선능력 iii) 자원활용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i)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ii)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iii)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② 외국어 : 해당없음 ③ 정보화능력 : 해당 없음 ④ 기타 특별요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 출 여 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small>*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small>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small>(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small>	
7.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	
8. 경력(재직)증명서 <small>[주의사항]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본인이 지원하는 임용분야 자격요건(관련분야 실무 경력 인정범위)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 자격요건 직무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0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small>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0.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빠짐없이 작성하되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주민등록상)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인지 : 대덕구 수입증지(대덕구청 1층 공감민원과에서 구입) 부착
- **5급(상당)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 다음 대상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수입증지 대신 관련 증명서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 :

생년월일 :

.....

.....

.....

.....

.....

.....

2026. . .

작성자 ○ ○ ○ (서명)

【작성요령】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채용직무분야 발전방안 및 근무자세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블라인드채용 운영 표준안 준수
-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신명조 15포인트)로 하고, 문서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실장(개방형직위) 직무수행계획서

구 분	내 용
응시 직위	
응시자 성명	
<p>< 작성요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요약서 A4 2매이내 별도 첨부)로 하고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씨크기 12, 줄간격 150mm, 용지 좌우상하 여백은 각각 2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번호를 부여.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구 분	자 격 요 건
경 력 기 준	[]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공공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자격을 가진 사람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
	[]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 감사 관련 업무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작성자: (서명)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 발급기관의 고유서식으로는 담당업무(직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

회 사 명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재직기간	년 월	주 근무시간	시간		
퇴사일자	년 월 일						
근 무 세 부 내 역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직급(위)	비 고	
. . . ~ .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담 당 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업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직 인

대전광역시대덕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